

2015년도 지방 중소기업 R&D센터 모집계획 공고

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『2015년도 지방 중소기업 R&D센터 모집계획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4월 20일
중 소 기 업 청 장

1. 사업계획

- 사업목적 : 수도권에 지방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입주 가능한 R&D 센터를 조성하여 수도권 R&D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
- 지원규모 : 20억원 내외
 - 2015년도 연구마을 예산을 활용하여 2개 내외의 센터를 구축하고 센터당 10개 내외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집적화하여 지방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R&D를 수행
 - * R&D센터 별로 10억원 내외의 예산을 할당하여 지원
- 전문기관 : 한국산학연합회
- 신청자격
 - (R&D센터) 기업부설연구소 입주에 필요한 공간확보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, 지방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수도권 소재 대학·연구기관
 - (입주기업) 기업부설연구소를 수도권에 설치·이전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

□ 지원내용

- 대학 및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지방 중소기업 R&D센터에 입주한 지방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연구인력 신규채용을 지원하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지원
- 입주기업 지원기간 : 1년 + 1년(사업화R&D 지원을 위해 1년 추가 지원 가능, 별도 평가 실시)

신규(1년)		계속(1년, 선택사항)	
R&D	· 과제개발 지원	R&D	· 1년차 연계 계속과제 개발
		사업화 R&D	· 금형개발 지원 · 생산 공정 기술개발

2. 신청자격

- (R&D센터) 수도권에 소재한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및 「기능대학법」에 따른 기능대학, 국·공립연구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,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
-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입주 가능한 유희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과제관리를 위한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보유
- (입주기업) 지방R&D센터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/이전하여 공동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방 중소기업

3. 지원금액 및 한도

□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 : 총사업비의 75%이내, 최대 2년

구 분	정부지원 비중		지원대상
	구분	국비	
R&D센터	2년 내외		수도권에 소재한 대학·연구기관
입주기업	신규	75%	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·연구기관 내에 설치/이전하여 공동 R&D를 수행하고자 하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
	계속	60%	

□ 입주기업 부담

- 과제 당 총사업비의 25%이상을 부담(2년차 40%이상 부담)
 - * 현금 부담비율 : 신규과제 3%이상, 계속과제 4% 이상
- R&D센터 입주에 따른 임대료는 기관별 기준에 따라 기업이 부담

4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지방 R&D센터 신청 방법

- 신청기간 : 2015년 4월 27일(월)~5월 4일(월) 18시까지
- 신청방법 : 전문기관((사)한국산학연합회)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·접수
 - * 단, 우편 접수시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소인분 인정
- 신청서류 : 지방R&D센터 운영계획서

□ 중소기업의 지방R&D센터 입주 신청방법

- 한국산학연합회에서 선정한 R&D센터를 중소기업개발종합관리 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정보공개(5월말 예상) 예정이며, 중소기업은 이를 확인 후에 희망하는 R&D센터에 오프라인으로 신청
- 신청서류 :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
5. 지원제외 사항

□ 사업에 참여하는 자(대학·연구기관, 중소기업, 대표자 등)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

- ①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
- ② 국세·지방세 체납자로 확인된 경우
 - 다만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
-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 - 다만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,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,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
- ④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,000%이상인 경우 (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)
 - 다만,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, 창업 3년미만인 중소기업,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
 -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,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
- ⑤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)

-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, 개발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,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,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
 -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(계량화·기능 추가 등 포함)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

-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 부당 유인·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
- 창업 3년 이상인 기업이 대면평가 전까지 재무제표(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)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

6. 기타 공지사항

- 중소기업은 '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'의 세부과제 중 1개 과제만 수행 가능
- 중소기업은 해당년도에 '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' 중 이미 수행 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최대 2개 과제까지 수행가능
 - ※ 기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예외
- 2005년부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,
 - 개별 중소기업당 '저변확대'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'저변확대'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
 - * 저변확대사업 :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('13년이후 지원받은 기업만 해당), 창업 성장기술개발사업, 제품·공정기술개발사업
 - 저변확대사업을 총 4회이상 참여한 경우에도 다른 R&D지원사업은 참여가능
- 사업에 참여하는 자 (대학·연구기관, 중소기업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)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-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연구마을 관리지침을 적용함

※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 안내는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

7. 문의처

○ 전문기관

전문기관	전 화	문의사항
한국산학연합회	042-720-3351, 3350	신청·접수 및 사업문의 등
중소기업청 R&D 콜센터	1357(내선 2번)	신청·접수 및 사업문의 등

※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

-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: <http://www.smtech.go.kr>
-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: <http://www.smba.go.kr>
- (사)한국산학연합회 홈페이지 : <http://www.auri.or.kr>